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등 〉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93호)

2021.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한성구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참고사항	3
II . 총괄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4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8
III . 조문별 검토의견	17
1. 제명	17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0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24
4. 출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5조 및 제6조)	27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2
6.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안 제12조)	39
7.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3조)	48

【 참고자료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주요내용	49
2.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52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53

I.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변재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1. 7. 20.

다. 회 부 일 : 2021. 7. 21.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

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두텁게 마련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사광가속기를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기초·원천 연구개발 경쟁력의 강화 필요성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 3. 24.)에서의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확정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¹⁾, 같은 해 5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충북 오창을 최적부지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후 2021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²⁾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1조 454억원(지방비 2,000억원 포함)이 투입되어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가속기동, 연구동과 같은 특수시설과 지원시설(총 연면적 69,400 m²)이 기본부지 260,000m² 내에 들어서며, 향후 클러스터 조성 지원시설이 그 외 추가 부지(280,000m²)에 구축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빔에미턴스³⁾ 0.1nm·rad이하) 가

1)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주요내용” 참조

2) “참고자료 2.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참조

3) 방사광가속기의 성능을 대표하는 수치로서, 분석도구인 전자빔의 단면적과 퍼짐 정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낮을수록 집광능력이 우수함.

속장치, 산업 우선지원 빔라인 3기를 포함한 초기 빔라인 10기
(최대 40기 가능) 구축을 통해 미래 첨단연구 인프라 구축 및
산업체 수요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

- (목적) 산업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기간) 2021. 7. ~ 2027. 6. (6년간)
 - * 상세설계(기본+실시설계) 2년, 가속장치 및 빔라인 구축 4년
- (총사업비) 1조 454억원
 - * 국비 8,454억원(예비비 454억원 포함) / 지방비 2,000억원(부지매입비 등)
- (부지/시설 규모) 540,000㎡(기본부지 260,000㎡ 포함) / 69,400㎡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충청북도·청주시
 - ※ (정부) 장비 및 연구시설 구축 등 / (지자체) 부지, 부대시설 등
- (사업규모)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
 - (방사광가속기 1기) 빔에미턴스 : 0.1nm·rad이하(0.058nm·rad)
빔에너지 : 4GeV, 둘레 : 약 800m, 밝기 : 포항 3세대 가속기의 약 100배
 - (빔라인) 초기 빔라인 10기 구축 (최종 40기 구축 예정)
 - ※ 추가 빔라인 30기는 '28년 운영착수 전까지 이용자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전략적 선정 추진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초기 구축 10기 빔라인 】

【 산업우선지원 빔라인 : ① ~ ③ 】

- ① 바이오신약 - 바이오소각산란
- ② 소재 구조 분석
- ③ 연엑스선 나노프로브

【 기초원천연구 지원 : ④~⑩ 】

- ④ 나노스케일 각분해 광전자 분광

- ⑤ 결맞음 엑스선 회절

- ⑥ 결맞음 소각 산란

- ⑦ 실시간 엑스선 흡수 분광학

- ⑧ 생체분자 나노결정학

- ⑨ 고에너지 현미경

- ⑩ 나노프로브

○ (시설규모)

시설구분		연면적 (㎡)	비율 (%)	프로그램 구성	비고
특 수 시 설	가속기동	40,200	57.9	• 선형가속기, 저장링동*, 초전도고주파동 등 * 직경 300~400m의 원형 건물	1층
	연구동 (1/2동)	7,000	10.1	• X-선 광학계개발실, 운전시설 등	2층
지 원 시 설	유틸리티동	8,000	11.5	• 중앙 수변전동, 전력설비동, 중앙 기계동 등	1층
	연구실험지원동 (1/2/3동)	6,500	9.4	• 가속장치시험실, 대전력연구실, 자장측정실, 진공조립실 등 • 정밀측정실, 빔라인장치실, 방사선안전 관련 보관시설 등	3층 /1층
	행정동	7,700	11.1	• 본부동(산업지원실, 산업체 인력양성실, 공용공간 등) • 보안관리동(출입시설, 보안관리실 등)	3층 /정문
계		69,400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8.

- 가속기는 대표적인 대형연구시설로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반시설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전통적인 핵·입자물리 연구에서 바이오, 에너지, 소재, 우주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가속기 시설 구축과정이나 구축된 시설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미국·유럽·일본 등의 기업체들은 자국 가속기 구축과정에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속기 장치들을 수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초연구부터 차세대 신소재, 초소형 기계 부품, 신약, 반도체 개발 등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부지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1조⁴⁾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근거 신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특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은 안정적인 방사광가속기 구축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세계적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성체계>

구분	제목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5조	출연
안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안 제7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임대료 등 지원
안 제9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10조	세제지원
안 제11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안 제12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안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시행일

- 다만,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방사광가속기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우선 대형 연구시설⁵⁾의 분류를 살펴보면, 방사광가속기는 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 등과 함께 대형가속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형가속기는 남극과학기지, 원자로, 핵융합 연구장치, 슈퍼컴퓨터 등과 같은 대형 연구시설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음.

<대형 연구시설의 분류>

(단위: 억원, 년)

거대과학기술분야	대형연구시설명	보유기관	지역	구축비용	착수년도	종료연도
우주	KSLV-1 발사대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남	2,055	2004	2011
천문	거대 마젤란 망원경	한국천문연구원	칠레	794	2003	2028
해양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1,067	2010	2016
극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극지연구소	남극	1,140	2006	2015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극지연구소	인천	1,251	2006	2010
생명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402	2003	2012
원자력	냉중성자 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585	2003	2009
	수출용 신형 연구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	4,389	2012	2023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957	1985	1995
핵융합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국제기구	프랑스	- (1642)	2004	구축중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	3,090	1995	2007

5) 대형 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첨단연구분야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Large-scale Research Facilities)을 의미함. ⇒ 대형연구시설은 법적개념은 아니며 舊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국가대형 연구시설구축지도에 근거함.

※ 대형 연구시설의 7대 주요 특징

- ① 주요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킹 효과 또는 군집 효과 유발
- ② 자체 연구그룹과 지원인력(기술인력, 행정인력 등)을 보유·운영
- ③ 소속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만, 자체적인 관리·운영
- ④ 지역 기반이 아닌 국가적 또는 국제적 성향의 대외 협력
- ⑤ 국가차원에서 1~2개 정도만 보유하고 유지
- ⑥ 대부분 상시적으로 외부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
- ⑦ 기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재원 마련 필요

거대과학 기술분야	대형연구시설명	보유기관	지역	구축 비용	착수 년도	종료 년도
가속기	포항방사광가속기(3세대)	포항가속기연구소	경북	4,339	1988	1994
	포항방사광가속기(4세대)	포항가속기연구소	경북	6,754	2011	2015
	양성자가속기	한국원자력연구원	경북	3,143	2002	2012
	중이온가속기(1단계)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9,493	2011	2021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서울대학교병원	부산	652	2010	2023
IT	슈퍼컴퓨터 4호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600	2007	2010

주 1. 국제핵융합실험로의 경우 ITER 건설단계 사업비는 EU가 45.46%,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 개국이 각 9.09% 분담하고 있음.

자료: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2013) 및 국가연구시설 중기('22~'24) 확충·고도화 방안 재구성

○ 구체적으로 대형가속기의 경우 기초연구·의료용·산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광가속기의 경우는 제정안을 통해 지원하려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외에 현재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에서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⁶⁾

○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대형 연구시설에 관한 입법례⁷⁾를 살펴보면,
①일본의 경우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을 방사광 시설, 고속컴퓨터 시설, 중성자선 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와의 교류 등을 촉진하

6) 포항방사광가속기의 경우 2017.9월 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가속기 소유권을 국유재산으로 편입 완료하였으나, 부지는 지상권으로 편입하여 부지 소유권은 여전히 포항공대에 있어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제정안에 따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7) 국가가속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진단(2019.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 위해 국가연구시설 등의 이용, 공유 촉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미국의 경우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규정 「Order 413.3A」에 의해 대형 연구시설의 사전구축계획부터 구축단계까지의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 연구시설을 포함한 부처의 모든 자산취득(Asset Acquisition)에 적용하고 있음.

③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통해 대형 연구시설의 구축 등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州)차원을 넘는 중요성을 가진 경우에 대해 동 법률 제91b조에서 연구시설의 구축 등 범지역적 연구 진흥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대형 연구시설에 관한 해외 주요국 입법례>

국가	법안	지원대상	목적	주요 내용
일본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사광시설 ○고속컴퓨터 시설 ○중성자선 시설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 의 공정·효율적 운영 및 공용 촉진도모를 위함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기본방침(제4조) 제3장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설치자 의 업무(제5조~제7조) 제4장 등록시설이용 촉진기관(제8조~제2 8조)
미국	Order 413.3A ※ DOE (에너지부) 규정	대형 연구시설	대형연구시설의 사전구 축계획(Preconstruction Planning)부터 구축단계 (Construction Phase)까 지의 사항을 규정	○ 시작단계(Initiation Phase)-프로그램의 전략적 목적, 목표, 안전기획, 설계, 계 획 규정 ○ 정의단계(Definition Phase)-전주기 비 용, 사용자 요구사항, 리스크 분석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 실행단계(Execution Phase)- 성과측정 베이스라인과 필요시 관리절차 변경사 항 등 검토 ○ 프로젝트 완료단계(Transition/Close O ut Phase)-마지막 테스트, 검토, 서류 작업 등을 통하여 대형연구시설 프로 젝트에 대한 운영, 장기관리 및 프로젝 트 완료의 실시 규정

국가	법안	지원대상	목적	주요 내용
독일	독일연방 공화국 기본법	대학을 제외한 연구사업과 연구시설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등 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 항 명시	제91b조(교육사업과 연구 진흥) (1) 연방과 주(州)는 다음의 사항을 진흥 하는 데 있어 범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을 수 있다: 1. 대학을 제외한 연구사업과 연구시설; 2. 대학의 과학과제와 연구; 3. 대규모 과학설비 등 대학의 시설 구축. (1)의 2에 따른 협정은 모든 주(州)의 동 의가 필요하다. (2) 연방과 주(州)는 교육체계 성과의 국 제비교평가, 그리고 관련 보고와 권고 작성에서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을 수 있다. (3) 비용분담은 관련 협정에서 규정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9.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내의 대형 연구시설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핵융합 연구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
흥법」, 슈퍼컴퓨터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형 연구시설에 관한 국내 입법례>

법률	지원대상	목적	주요 내용
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 촉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 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 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 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법률	지원대상	목적	주요 내용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 컴퓨팅의 육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9.

- 따라서, 대형 연구시설 중 하나인 대형가속기 가운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
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또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
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을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 역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이와 같이,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출연 근거 마련(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국제교류 지원(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봄.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의 경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⁸⁾ 개정이 병행⁸⁾되어야 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무상사용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 세부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함.

8)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음.

나) 검토사항

- 제정안은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 하에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제정안의 체계정당성의 원리⁹⁾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특별법의 제정은 제정 필요성, 특별법의 실효성과 적합성, 기존 법령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반법 체계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규정하더라도 일반법에 대한

9)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같은 법규범 내 또는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법규범의 구조·내용이나 근거가 되는 원리가 서로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말함(「2019 법제이론과 실제」 p.67).

개별적·구체적인 특례라는 입법취지가 법 제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법률이 어떤 내용의 특례인지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¹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¹¹⁾을 근거로,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일반법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경우는 그 내용에 관하여는 따로 일반법을 특정할 수 없어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5) (생략)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 8) (생략)

② ~ ④ (생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동 법의 목적을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사광”,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 등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나) 제정안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광”이란 방사광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원운동 등 가속도운동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말한다.
2. “방사광가속기”란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방사광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제작·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4.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여 방사광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해야 하는바,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요약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사광”,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므로 여러 개의 용어가 순차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념부터 앞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안 제2조제1호 “방사광”은 제정안에서 1차레도 언급되지 않더라도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이므로 별도의 정의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정의규정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5조(출연), 제8조(임대료 등 지원), 제10조(세제 지원),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는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약칭을 사용할 경우 매번 그 약칭한 조문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약칭을 ‘예시’로 판단하거나 나머지 사항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의규정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각종 혜택을 받는 기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의조항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5조¹²⁾에서 처음으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안 제2조제4호에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제정안 조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및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검토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은 국가가 방사광가속기 장비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부지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사업임.
- 이에 안 제3조는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의무화하는 등 방사광가속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선언적으로 기술하여 강조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민이나 사업자, 관계인 등의 책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제정안이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관련 정책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단순 용어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법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출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5조 및 제6조)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정안 조문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안정적인 방사광가속기 구축환경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경우 해당 조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안 제6조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인력수급 및 활용 등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¹³⁾,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¹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

1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15) 등에서는 소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지정 절차·지정취소, 안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속기 기초인력 양성은 모든 대학이 가능한 반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은 포항공대, 고려대 등 매우 제한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기관 모델을 먼저 확립함으로써 인력양성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속기 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22~'27년 / 267.2억원

○ (내용) 대학(원)중심의 실습교육과 대형가속기 현장실습을 연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인력 양성 : 대학(원) 중심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속기 분야 석·박사 등 인력 양성 지원(총129명)

* 가속기 및 빔라인 설계·구축·운영을 위한 실습 과목 및 심화 교과목 운영하고 가속기 테스트 베드(빔 진단 장치·제어, RF 시스템, 이온원 및 입사기, 전자석, 가속기 물리) 활용 실습 진행

구분	'22	'23	'24	'25	'26	'27	합계
석사	4	8	9	9	10	10	50
박사	5	3	5	10	17	39	79
합계	9	11	14	19	27	49	129

· 활용지원 :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박사 후 인력 등에 연계형 대형가속기 현장 (방사광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장(1-2년)·단기 연수를 통해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현장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 육성 추진

○ (지원방식) 출연(100%)

○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단위 : 억원)

내역사업명	구분	'22	'23	'24	'25	'26	'27	합계
인력양성	국비	26.2	34.9	37.8	35.8	34.8	30.5	200
	지방비	-	-	-	-	-		0
	민자	-	-	-	-	-		0
활용지원	국비	9.3	12.4	12.4	12.4	10.7	10	67.2
	지방비	-	-	-	-	-		0
	민자	-	-	-	-	-		0
합계	국비	35.5	47.3	50.2	48.2	45.5	40.5	267.2
	지방비							
	민자							
	계	35.5	47.3	50.2	48.2	45.5	40.5	26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8.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임대료 등 감면, 부대시설 설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제정안 조문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또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임대료 등 감면, 부대시설 설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방

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첫째, 안 제8조(임대료 등 지원)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사용하는 토지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16)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4조17)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을 마련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공유재산의 통일적 관리·운영이 어렵고,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 감면은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8)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 둘째, 안 제10조(세제지원)의 경우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과 같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출연을 통해¹⁹⁾ 운영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19)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지원 특례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개별 세법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출연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출연기관의 개별 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현황>

구분	제목	세액감면 내용	세액감면 근거
국세	증여세	비영리 법인이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담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을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연(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구분	제목	세액감면 내용	세액감면 근거
지방세	지방 교육세	◦ 재산세 본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 특별세	◦ 지방세 중 85%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부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8.

- 참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20)에서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21)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

2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²²⁾에서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형태에 대해서만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²³⁾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세제지원에 대한 선언적 조문을 규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세제지원 규정 신설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6.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안 제12조)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를 규정함.

나) 제정안 조문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

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²⁴⁾을 수익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제1항),

이 경우 그 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24)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4항),

국유·공유재산을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 국유·공유재산 특례란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및 양여 등 국유·공유재산에 행해지는 각종 조치를 말하는데,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²⁵⁾에서는 국유재산의 특례를 ①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의 감면, ②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③양여로 구분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및 매각 등에 있어서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국유·공유재산 특례 주요내용>

-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 가능
- 국유·공유재산 대부기간 50년 이내, 갱신 가능
- 국유·공유 토지 사용·수익·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반환시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조건 가능)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 국유·공유재산 매각 시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가능

○ 이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²⁶⁾,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²⁷⁾, 「국제과학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²⁸⁾ 등 유사 입법례의 예에 따른 것임.

-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²⁹⁾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다만, 공유재산 특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특례와 함께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³⁰⁾이 없어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가능함.
- 특히, 안 제12조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무상사용(20년 → 50년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¹⁾
- 또한,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타부처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1.8.31. 의결, 2021.9.14. 시행)에서는 제정안의 특례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 ①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그 갱신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 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갱신은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30) 2021. 11월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의안번호 제13019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1) 2021. 11월 현재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때까지 한정하고, ③영구시설물 축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년에 걸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³²⁾

○ 둘째, 기획재정부는 ①안 제12조제1항(수의계약 대부)과 관련하여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해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은 외교·국방, 천재지변 등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유재산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안 제12조제3항(영구시설물 축조)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으로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되어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제정안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건 미이행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8조³³⁾에 따라 기부채납을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셋째, 행정안전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사용하는 토지나 시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³⁴⁾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안

33)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 6.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대부기간의 특례(안 제12제2항), 영구시설물의 축조(안 제12조제3항)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임.

특히, 안 제12조제2항(대부기간의 특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 장기 대부는 공유재산 반영구 사용 및 사유화를 야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횡수에 제한없이 대부기간의 갱신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3조)

가) 제정안 요지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정안 조문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봄.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 주요내용³⁵⁾

□ 수립배경

- 고성능 대형가속기가 미래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 연구인프라로 부상, 인프라 확충 요구가 증대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 중
-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활용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 노출
 - 특히,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전용 빔라인 부재로 산업지원 R&D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美-中, 韓-日 등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기술의 경제무기화 등으로 핵심 원천기술 자립 필요성이 증대
- 대형가속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첨단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필요

⇒ 국내·외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현황 및 활용수요 분석을 통해 체계적 지원전략 마련 필요

□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현황

- (해외) 주요 선진국은 대형가속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기초·원천연구 경쟁력을 선도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 특히, 방사광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등을 활용한 반도체·소재·신약 개발 등 첨단산업 R&D 지원
- (국내) 5기의 대형가속기가 구축·운영 중³⁶⁾으로, 다양한 기초연구성과 창출과 소재·부품 등 산업역량 강화에 기여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8.

36) ①구축 중(2기): 중이온가속기(대전), 중입자가속기(부산), ②운영 중(3기): 방사광가속기(포항, 제3·4세대), 양성자가속기(경주)

□ 국내 대형가속기 활용 수요 분석

- 지속적으로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 지원 기능이 필요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확충 요구 증대

* 이용자지원율의 지속하락('09년 88% → '19년 71%), 최근 5년간 기업의 빔타임제공은 요구시간 대비 53%에 불과('16년 60.2% → '19년 47.6%)

- 현재 구축 중인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성공적인 구축과 동시에 향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주요 추진과제

과제 1 방사광가속기 전략적 활용 확대

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 (성능) 반도체·소재·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 주요국의 최신 방사광가속기와 대등한 성능* 보유

* 신규사양(안) : 빔에너지 4GeV, 빔에미턴스 < 0.1nm·rad, 둘레 약 800m, 빔라인수 40기 이상

- (시설)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고성능 빔라인 시설 구축·운영하고 산업계 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
 - 산업 R&D지원을 위해 초기 구축 빔라인(10개 내·외)의 30%를 산업지원 R&D 전용(중소기업 의무할당제 등)으로 구축, 70%는 기초·원천·연구에 활용

② 이용자 지원 환경 개선

- 연구수요 부응 및 빔라인 수월성 확보 위한 빔라인 증·개설
 - 3세대는 빔라인 성능향상, 수요기반 빔라인 증설(37~40기), 빔안정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4세대의 경우 빔라인 증설 및 빔타임 지원 확대 추진
- 효율적인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인력 및 조직 확대

③ 차별화를 통한 활용성 확대

- (3세대) 신진연구자 빔타임 배정, 운영 모드 다양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4세대) 중점 분야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원, R&D빔타임제 등

과제 2

양성자가속기 산업지원 역량 강화

① 빔성능 향상 추진

- (시설성능) 자율 주행차, AI 등 핵심 전자기기·부품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200MeV***급(현 100MeV) 대기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 구축
- (추진방안) 이용 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21년)를 거쳐 성능확대 및 관련 시설 구축 추진

② 빔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미구축 빔라인의 이용자 맞춤형 증설을 통해 시설 이용 효율 증대
- 이용자 친화형 맞춤형 지원 기능강화를 통한 시설 이용 확대 추진

과제 3

중이온가속기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 안착

① 성공적 구축·운영 완수

- (장치 구축) 철저한 리스크 관리,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성공적으로 '21년 적기 구축
- (단계별 운영) 초기 빔안정화 달성 후 중장기적 활성화 추진

② 다양한 기초연구분야 활용 확대

- 7개 실험장치 이용하여 핵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명, 물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로 단계별 확대

과제 4

중입자가속기 첨단의료 및 방사선의학 연구 지원

① 성공적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초전도 회전갠트리 등 첨단 설비가 포함된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의 적기 도입으로 난치성 암환자 치료시스템 확보('23)
- 입자치료 관련 임상연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 암센터(대학병원 등)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24~'25)

② 방사선 의학연구 기반 조성

- 방사선의학연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용 빔라인 증설 추진(~'29)
- 입자선 활용 방사선 의·생명 연구 허브 육성('30)

2.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³⁷⁾

- 조사기간 : '20. 7. ~ '21. 4.
 - 조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총사업비 **10,454억원, B/C 0.78, AHP 0.724**
 - (총사업비) **9,980억원(예타 신청) → 10,454억원(474억 증)**
- ※ 가속장치 3,460억원, 빔라인 1,305억원, 시설구축비 2,907억원(증454)*, 인건비 및 경상경비 782억원(감65), 부지 및 전력인입선 2,000억원(증20)

<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 억 원)

소요자원		'22	'23	'24	'25	'26	'27	합계	비고
예산	가속장치 구축	190	360	420	510	1,220	760	3,460	국비
	빔라인 구축	20	40	220	330	365	330	1,305	
	기반시설 구축*	195	288	585	1,482	872	267	3,689	
	소계	405	688	1,225	2,322	2,457	1,357	8,454	
	부지, 전력인입선로	1,000	1,000					2,000	지방비
	합계	1,405	1,688	1,225	2,322	2,457	1,357	10,454	

*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기타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예산으로 편입

○ 분야별 주요 의견

- 과학기술성 : 산업계 수요 반영, 빔라인(10기) 재선정하여 적절성 확보
- 정책성 : 상위계획과 부합도는 적절함
- 경제성(**0.788**) : 공사비·운영비 감소, 누락된 측량조사비·시설부대비용·예비비 등 반영, 지방비 중 용지보상비 증가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8.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3
----------	-------

발의연월일 : 2021. 7. 20.

발 의 자 : 변재일 · 조승래 · 설 훈
정정순 · 강선우 · 도종환
박덕흠 · 임호선 · 이장섭
윤영찬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광가속기를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광”이란 방사광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원운동 등 가속도운동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말한다.
2. “방사광가속기”란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방사광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제작·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4.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여 방사광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및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

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